

1. 개정이유

국가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3, 별지 제1-1호서식).
-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4, 별지 제1-2호서식).
-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및 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5, 별지 제1-3호서식).
-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6, 별지 제1-4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영 제13조의4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술보유 사업장	(소재지)	
		(관리책임자명)	
		(보안책임자명)	
	기술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신청사유	[]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		
신청사유 발생일	[]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확보		
	[] 기타 사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등에 대한 자료	수수료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정보	
	3.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해당 국가핵심기술 개발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없음

유의사항

- 신청사유 발생일은 표시한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판정일 또는 권리이전 발생일입니다.
-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관련 국가핵심기술 명칭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기술명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술보유	(소재지)	
		(관리책임자명)	
	사업장	(보안책임자명)	
	기술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변경사유		
변경사유 발생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등에 대한 자료	수수료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정보	
	3. 변경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변경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없음

유의사항

- 변경사유는 등록신청 이후 등록신청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관련 국가핵심기술 명칭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기술명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년 월 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소재지 :
4. 사업자등록번호 :
5. 기술분야 :
6. 등록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술보유 사업장	(소재지)	
		(관리책임자명)	
		(보안책임자명)	
	기술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신청사유	[]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의 권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 않음			
[] 국가핵심기술 이전 등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 권리가 없음			
신청사유 발생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등에 대한 자료	수수료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정보	
	3. 말소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없음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말소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유의사항

- 신청사유 발생일은 표시한 등록말소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의 발생일입니다.
-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관련 국가핵심기술 명칭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기술명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u>
<u><신 설></u>	<u>제1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u>
<u><신 설></u>	<u>제1조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u>
<u><신 설></u>	<u>제1조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영 제13조의4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u>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술보유	(소재지)	
		(관리책임자명)	
		사업장	(보안책임자명)
	기술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신청사유	[]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		
	[]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확보		
[] 기타 사유			
신청사유 발생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등에 대한 자료	수수료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정보	
	3.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4. 해당 국가핵심기술 개발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없음

유의사항

- 신청사유 발생일은 표시한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판정일 또는 권리이전 발생일입니다.
-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관련 국가핵심기술 명칭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기술명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술보유	(소재지)
		(관리책임자명)
	사업장	(보안책임자명)
	기술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변경사유		
변경사유 발생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등에 대한 자료	수수료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정보	
	3. 변경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없음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변경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유의사항

1. 변경사유는 등록신청 이후 등록신청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2.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관련 국가핵심기술 명칭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기술명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등록번호 제 호(년 월 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소재지 :
4. 사업자등록번호 :
5. 기술분야 :
6. 등록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술보유	(소재지)	
		(관리책임자명)	
	사업장	(보안책임자명)	
	기술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신청사유	[]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의 권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 않음			
[] 국가핵심기술 이전 등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 권리가 없음			
신청사유 발생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대상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등에 대한 자료	수수료
	2.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명칭, 기술형태 및 특성, 기술보유 사업장 정보	
	3. 말소 등록 신청 이유에 관한 자료	없음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말소등록에 관한 참고자료	

유의사항

- 신청사유 발생일은 표시한 등록말소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의 발생일입니다.
-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관련 국가핵심기술 명칭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기술명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